

2023년 1분기 예산전용 보고

예산전용 개요

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
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보고내용 : 2023년 1분기 예산전용 보고

※ 예산전용: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 변경,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변경하여 사용 (목그룹 : 인건비-100, 물건비-200, 경상이전-300, 자본지출-400 등)

2023년 1분기 예산전용 내역 : 총 2건, 5천 9백만원

(단위 : 천원)

부서	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감액	증액	승인일	전용사유
경제정책실(합계)			6,945,046	△59,000	59,000		
금융투자과(계)			6,200,000	△37,000	37,000		
금융 투자과 (1건)	서울핀테크랩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6,200,000	△37,000	-	'23.3.2.	- 서울핀테크랩 환수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에 따라 수탁기관에 환수금 반환이 필요하여
		기타 반환금등 (802-03)	-	-	37,000		- 미집행 예상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타반환금으로 전용

부서	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감액	증액	승인일	전용사유
창업정책과(계)			745,046	△22,000	22,000		
창업 정책과 (1건)	서울창업 성장센터 운영	민간위탁금 (307-05)	745,046	△22,000	-	'23.3.14.	- '23. 3월 민간위탁기간 만료되었으나 재위탁 절차 이행시간 소요로 4월 한달 공백 발생,
	서울창업 성장센터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-	-	22,000		- '23. 4월 한달 간 현재 수탁기관과 용역 계약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자 전용